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613

발의연월일: 2025. 1. 17

발 의 자:서영교・이건태・이연희

한정애 • 박희승 • 김문수

위성곤・윤준병・허 영

추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역 후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연금 제도는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보상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운영되지만,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정서에도 어긋남.

이에 퇴직 후에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범죄자가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여 정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법률 제 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4항 중 "재직 중의 사유로"를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의 사유로"로 하고,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 시점부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급한 퇴직 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와 퇴직 수당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로 하며, "낸"을 "납부한"으로 하고, "반환하되"를 "반환하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
한) ① ~ ③ (생 략)	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④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의 사유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	<u>로</u>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u>경우</u>	
<u>에는</u> 이미 <u>낸</u> 기여금의 총액에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 시점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	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급
를 가산한 금액을 <u>반환하되</u> 급	한 퇴직 급여(연금인 급여를 제
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외한다)와 퇴직 수당을 전액 반
	환하여야 하며, 납부한
	<u>반환하고</u>